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236호 2017. 1. 20(금)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 시 정책을 고려한 주차요금 감면 항목/비율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 방지
-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조항 신설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상이한 구 조례 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이용자 혼선 방지
- ❍ 기타 용어순화

2. 주요 개정내용

- ○ 주차요금 감면 항목 정비 및 신설(정비 2개항목, 신설 7개항목)
-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관련 조항 신설
-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비율 조정
- ○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중 20미터 초과 도로에 대한 기준 제정
- ○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852) 또는 Fax(560-27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시 정책을 고려한 주차요금 감면 항목/비율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 방지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조항 신설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상이한 구 조례 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이용자 혼선 방지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항목 정비 및 신설(정비 2개항목, 신설 7개항목)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관련 조항 신설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비율 조정

○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중 20미터 초과 도로에 대한 기준 제정

○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마련

○ 기타 용어순화

4.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5조제7호 중 “차량”을 “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제8조제2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30퍼센트”를 “3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6m”을 “6미터”,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준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9조제1항제3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영주차장의”를 “공영주차장이”로, “이상이”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의3제3항 중 “구금고”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로 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보조금원금”을 “보조금 원금”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최초30분이후 15분당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0,000원	7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1. 주차요금표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1-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9:00부터 19:00까지

나. 야간 :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5. 1구획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6. 주차요금의 특례

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별표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제17조의2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32㎝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 ~ 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8조의2제1항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7.---------- 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생 략)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 따르고----------.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의한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한다.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른 ----------.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따르되, ----------. 1. ---------- 따른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 35퍼센트-----.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너비 6m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④ ----6미터---------- 경우로써 ----------. 제16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7조의2(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장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를 준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같다.	
②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삭제
③ 장애인 등의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주차대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④ 삭제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

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정기준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6개월 ----------.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공영주차장이 ---------- 이상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조금 원금----------.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인천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5-26>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도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 · 실비기준)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전문개정 2010.10.2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15-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15-07-27>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5항(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건설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퍼센트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군·구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13-05-27. 2014-10-31>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주차장의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내 용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분할 납부 할 경우 등의 이자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의 분할 납부할 경우 및 과오납금 반환금의 이자율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대부료)의 재산평가 기준 및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3 (FAX 560-2720)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 등 이자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의 분할 납부할 경우 및 과오납금 반환금의 이자율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대부료)의 재산평가 기준 및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민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시”를 “실태조사 시”로, “대부시”를 “대부 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회의결”을 “구 의회 의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을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대”를 “전대(轉貸)”로 한다.

제25조 중 “중의사용권”을 “중의 사용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에 저촉되어”를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를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로, “부지의”를 “부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32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할 납부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할 납부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

제39조 제목 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환차금의 잔

액에 연 4퍼세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한다.

제41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9조 중 “관사라 함은”을 “관사란”으로 “사용에”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 위원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심의회 운영) ① ---------- 회의를 시작----------.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② (생 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	제9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실태조사 시 ---------- 대부 시----------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다음 연도 ----------. ---------- 구 의회 의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수익허가) ① (생 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 전대(轉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고권 배제) ---------- 중의 사용권 ----------.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게을리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 사용중----------.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략)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1.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생 략)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삭 제>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토지]대부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토지.건물]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토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 면적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 부지 ----------.

<신 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 설>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② ---------- 분할 납부하는 경우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할 납부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할 납부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분할 납부하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분할 납부하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 분할 납부하게 ----------.
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②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정의) ------"관사"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6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1.20.~2.9.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1.20.~2.9.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